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호중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356

발의연월일: 2024. 9. 26.

발 의 자:윤호중·문진석·윤종군

홍기원 • 이기헌 • 조승래

이병진 · 정성호 · 임광현

권칠승·임호선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.72명에 이르는 등 역대 최저치를 계속하여 경신하며 심각한 저출산 상황임.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생산인구 감소로 이어져 저성장, 세원 감소, 고령층 복지를 위한 재정지출 증가 등 국가의 경제와 재정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. 이에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저출산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따라,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시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(안 제7조제2항제8호 신설),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원칙에 인구증감을 고려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(안 제16조제7호신설). 또한 예산과 기금이 인구문제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예산을 통한 인구증감효과를 분석하고, 예산이 집행된 후 결산 단계에서도 인구증감실적을 확인할 수 있도록

'인구증감인지 예결산제도'를 도입하려는 것임(안 제27조의2, 제57조의 3, 제68조의4 및 제73조의4 신설).

### 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「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 안」(의안번호 제4360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 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 어야 할 것임.

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"제73조의4"를 "제73조의5"로 한다.

- 8.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제16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  - 7. 정부는 적정 인구수준을 유지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이 인구의 증가와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2장제1절에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7조의2(인구증감인지 예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적정 인구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예산이 인구의 증가와 감소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 석한 보고서[이하 "인구증감인지(人口增減認知) 예산서"라 한다]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 인구증감인지 예산서에는 적정 인구수준 유지에 관한 기대효과, 성과목표, 세대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③ 인구증감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

으로 정한다.

제34조에 제9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3. 인구증감인지 예산서

제5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57조의3(인구증감인지 결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적정 인구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인구증감인지 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, 적정 인구수준 유지에 관한 효과분석 및 평가, 세대별 수혜실적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65조 본문 중 "제68조의2, 제68조의3"을 "제68조의2부터 제68조의4 까지"로 한다.

제6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68조의4(인구증감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적정 인구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기금이 인구의 증가와 감소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인구증감인지 기금운용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 인구증감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적정 인구수준 유지에 관한 기대효과, 성과목표, 세대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  - ③ 인구증감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1조에 제6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6의3. 인구증감인지 기금운용계획서

제73조의4를 제73조의5로 하고, 제73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73조의4(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기금이 적정 인구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 하 "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
  - ②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, 적정 인구수준 유지에 관한 효과분석 및 평가, 세대별 수혜실적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#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인구증감인지 예산서 및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의 작성·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27조의2, 제34조제9호의3 및 제57조의3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인구증감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·제출에 관한 적용례) 제68조의4, 제71조제6호의3 및 제73조의4의 개정규정은 각각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	제7조(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
등) ① (생 략)	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	②
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	
다.	
1. ~ 7. (생 략)	1. ~ 7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8. 인구증감에 관한 전망과 근
	거 및 관리계획
<u>8.</u> (생 략)	<u>9.</u> (현행 제8호와 같음)
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	③
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	
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	
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73조의4</u> 에 따른 중장기 기	2. <u>제73조의5</u>
금재정관리계획	
3. ~ 5. (생 략)	3. ~ 5. (현행과 같음)
④ ~ ① (생 략)	④ ~ ① (현행과 같음)
제16조(예산의 원칙) 정부는 예산	제16조(예산의 원칙)
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	
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	
다.	
1. ~ 6. (생 략)	1. ~ 6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7. 정부는 적정 인구수준을 유

<신 설>

제34조(예산안의 첨부서류) 제33 저 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 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지하여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이 인구의 증가와 감소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,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.

제27조의2(인구증감인지 예산서의 의 작성) ① 정부는 적정 인구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예산이인구의 증가와 감소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[이하"인구증감인지(人口增減認知)예산서"라 한다]를 작성하여야한다.

- ② 인구증감인지 예산서에는 적정 인구수준 유지에 관한 기 대효과, 성과목표, 세대별 수혜 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인구증감인지 예산서의 작 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34조(예산안의	첨부서류)

\_\_\_\_\_\_

1. ~ 9의2. (생 략) <u><신 설></u> 10. ~ 16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제6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기금 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 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 부터 제68조까지, <u>제68조의2,</u> 제68조의3, 제69조부터 제72조 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. 다만,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 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, 제68조제1항 전단 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

1. ~ 9의2. (현행과 같음) 9의3. 인구증감인지 예산서 10. ~ 16. (현행과 같음) 제57조의3(인구증감인지 결산서 의 작성) ① 정부는 예산이 적 정 인구수준을 유지하는 방향 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(이하 "인구증감인지 결 산서"라 한다)를 작성하여야 한다. ② 인구증감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, 적정 인구수준 유지 에 관한 효과분석 및 평가, 세 대별 수혜실적 등을 포함하여 야 한다. 제6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---------제68조의2 부터 제68조의4까지-----

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.

<신 설>

제71조(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)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 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기금운용계획변경안(이하 "기금운용계획안등"이라 한다)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

\_\_\_\_\_

-----

제68조의4(인구증감인지 기금운 용계획서의 작성) ① 정부는 적정 인구수준의 유지를 위하 여 기금이 인구의 증가와 감소 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(이하 "인구증감인지 기 금운용계획서"라 한다)를 작성 하여야 한다.

- ② 인구증감인지 기금운용계획 서에는 적정 인구수준 유지에 관한 기대효과, 성과목표, 세대 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- ③ 인구증감인지 기금운용계획 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 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1조(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 부서류) -----

\_\_\_\_\_

\_\_\_\_\_

\_\_\_\_\_

한다. 다만, 기금운용계획변경 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 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 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~ 6의2. (생 략) <u><신 설></u>

7. (생 략) <신 설>

<u>제73조의4</u>(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 등) (생 략) \_\_\_\_\_

----.

 1. ~ 6의2. (현행과 같음)
6의3. 인구증감인지 기금운용계 획서

7. (현행과 같음)

제73조의4(인구증감인지 기금결 산서의 작성) ① 정부는 기금 이 적정 인구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 하는 보고서(이하 "인구증감인 지 기금결산서"라 한다)를 작 성하여야 한다.

② 인구증감인지 기금결산서에 는 집행실적, 적정 인구수준 유 지에 관한 효과분석 및 평가, 세대별 수혜실적 등을 포함하 여야 한다.

제73조의5(중장기 기금재정관리 계획 등) (현행 제73조의4와 같 음)